

# 업 무 협 약 서

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과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MOU체결 기관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사업을 연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업무협조)**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
1. 김해시 동부권역 내 발생한 학대피해노인 사례 중 사회참여, 자립,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이를 욕구로 표현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김해시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적극 연계 및 협조
2.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 중 직접 노인학대를 호소하거나 사업 운영과정에서 노인학대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,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
3.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, 홍보캠페인 등 업무연계 협조
4. 기타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업무연계 및 협력

**제3조(권리·의무의 승계)** 본 협약서 체결 후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 된다.

**제4조(비밀유지 의무)** 협약기관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유효기간)**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각 유관기관 사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**제6조(변경·해지)** 본 협약은 각 유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,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. 이때 특정 한 기관에서 협약을 해지할 경우 나머지 기관들의 협약은 유지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관들이 각각 기명날인 한 후 협약해지 시까지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11월 14일



관장 류재복

관장 서수정

류재복

서수정